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장애인복지법」 제42조, 「노인복지법」 제25조,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15조, 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16조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동구가 설치 및 관리하는 공공시설에 신문·복권 판매대,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를 설치 및 계약할 때에는 장애인(「장애인복지법」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사람) 및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 중 65세 이상인 사람, 한부모가족,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2조(적용의 범위) ① 제2항에 따른 공공시설에 신문판매대 등을 설치할 때에는 다른 법령에 따른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. 다만, 공공기관이 직영하는 경우와 매점의 경우 그 규모가 10㎡ 초과하는 시설은 제외한다.</p>	<p>제1조(목적) ----- ----- ----- 제16조의2,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68조의2, 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47조의 6 ----- ----- 관련법에 따른 장애인, 65세 이상의 자 ----- ----- 유족 또는 가족,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, 북한이탈주민 ----- -----.</p> <p>제2조(적용의 범위) 다음 각 호에 따른 공공시설에 신문·복권 판매대,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(이하 "신문판매대,매점 등"이라 한다)를 설치할 때에는 다른 법령에 따른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. 다만, 공공기관이 직영하는 경우와</p>

<p>② 이 조례의 적용대상 공공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 서울특별시 성동구(이하 "구"라 한다.)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</p> <p>2. 구 및 그 소속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</p> <p>제3조(사전공고)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(이하 "구청장"이라 한다)은 제2조에 따른 공공시설에 신문·복권판매대,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(이하 "신문판매대 등"이라 한다.)의 설치계약 대상이 있을 때에는 이를 구보게재 등의 방법에 따라 사전공고하여야 한다.</p> <p>제4조(신청) 신문판매대 등의 설치계약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하여야 한다.</p> <p>1. 신문판매대 등의 설치계약신청서(구청장이 정한 소정양식)</p> <p>2. 장애인등록증,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,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등 우선 계약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</p> <p>제5조(우선계약) 구청장은 제4조에</p>	<p>매점의 경우 그 규모가 1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시설은 제외한다.</p> <p>1. ----- -----</p> <p>2. ----- -----</p> <p>제3조(사전공고) ----- ----- ----- 신문판매대, 매점 등 ----- ----- -----.</p> <p>제4조(신청) 신문판매대, 매점 등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신문판매대, 매점 등 ----- -----</p> <p>2. 장애인, 65세 이상의 자, 한부모가족,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,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, 북한이탈주민(이하 "장애인 등"이라 한다)----- ----- -----</p> <p>제5조(우선계약) -----</p>
--	---

